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27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 ·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대가 편취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 ·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1) 제1유형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 ·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보호 ·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 · 요구 · 약속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위계 · 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폭력행위처벌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나.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 · 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 · 알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02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나.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 ·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 · 요구 · 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3)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 건물 제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사.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자.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❷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❸ 위 ❶, ❷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❶, ❷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❶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❷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❶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❷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❸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형)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❶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❷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❸ 위 ❶ 또는 ❷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❶ 또는 ❷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